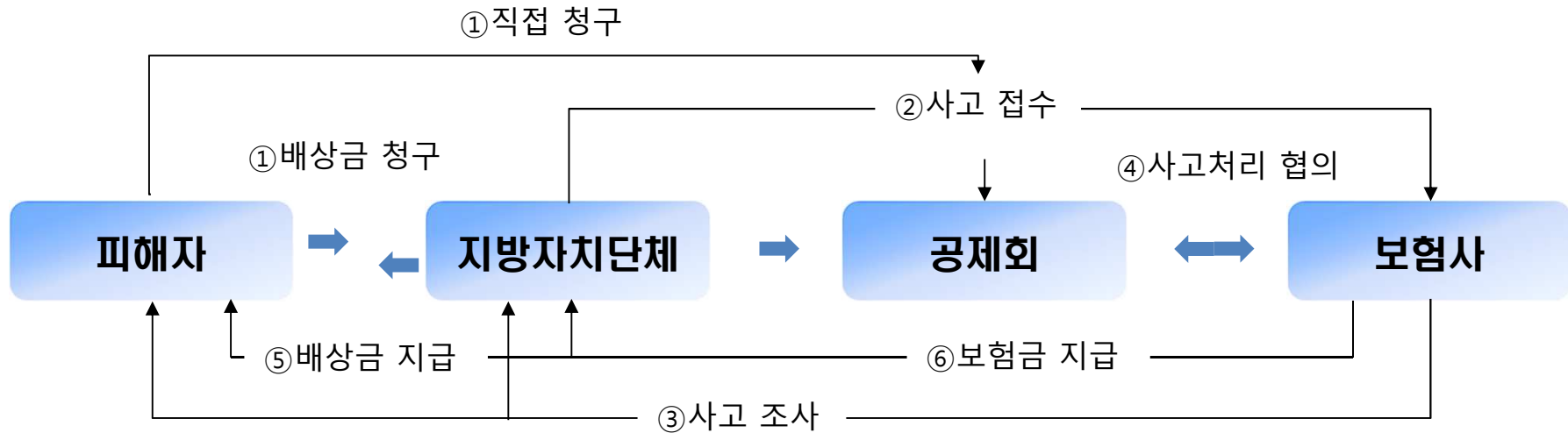


영조물배상책임보험 처리 흐름도

■ 사고처리절차



-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

※ 단,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

-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,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

-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,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

※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(공제회)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,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

영조물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

단계별 이해관계자 역할

1단계: 최초 사고 통보시	2단계: 보험조사 시	3단계: 보험금 지급 시
<p>피해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신청방법) 유선 또는 서면(별도양식) • (신청기관) 피보험자, 공제회, 보험사 • (제출자료) 사고입증자료*, 진단서 등** *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(선택) **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(선택) <p>피보험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제출자료)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(보험약관 별지2호) • (제출기관) 지역 공제회 	<p>보험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내용)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• (판단)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• (제출자료)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[보험약관 제15조] -(대인) 초진기록지, 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 등 -(대물) 수리비 영수증 등 <p>피해자, 피보험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	<p>보험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<p>피해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절차) 신분증통장사본합의서등보험사제출 <p>피보험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절차)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* *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

※ 사고내용, 피해정도,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(순서변경 포함)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,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

별표 공제회 시도지부 문의처

지역	연락처	지역	연락처
서울	02-2133-3298	전북	063-280-2334
부산	051-888-2271	전남	061-286-3481
대구	053-803-3095	경북	054-880-8543
인천	032-440-2679	경남	055-211-7898
광주	062-613-3136	제주	064-710-6918
세종	042-270-6493	대전	042-270-6493
경기	031-8008-4198	울산	052-229-6372
강원	033-249-2339	충남	041-635-3645
충북	043-220-2836	인천	032-440-2679